

## 싱가포르 국제중재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of Singapore

김 상 찬\*

Sang-Chan Kim

김 유 정\*\*

Yu-Jung Kim

#### <목 차>

- I. 서론
- II. 싱가포르의 중재지로서의 의의
- III. SIAC의 개요
- IV. SIAC의 국제중재절차
- V. 신속절차 및 긴급중재절차
- VI.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주제어 : 싱가포르, 국제중재, 중재절차, 중재지, 중재규칙,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ICC)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주저자)

\*\* 법무법인 대광 변호사(공동저자)

## I. 서론

오늘날 국제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현지 기업들과의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거래분쟁은 대부분 국제중재기관에서 해결하고 있고, 각국은 자국의 중재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자국의 중재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있다.<sup>1)</sup> 각국의 국제중재기관 또한 대표적인 국제중재기관이 되기 위하여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sup>2)</sup>

2010년에 실시된 ‘세계중재기관 선호도 조사’에 의하면,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ICC)이 50%로 가장 높고, 그 다음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이 14%, 미국중재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AAA/ICDR)이 8%로 나타났으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이하 ‘SIAC’라고 한다)가 5%를 차지하였다. 중재기관 선택요인으로는 ‘중립성’과 ‘국제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 중재기관의 ‘평판 및 인식’, ‘중재규칙’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sup>3)</sup>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이용하는 국제중재기관으로서, ICC, AAA, HKIAC, CIETAC, SIAC 등이 있는데,<sup>4)</sup> 종래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ICC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지만,<sup>5)</sup> 아시아 국가들 간의 투자나 거래가 증가하면서 CIETAC이나 SIAC를 이용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ICC<sup>6)</sup>나 CIETAC<sup>7)</sup>의 중재절차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

- 1) 예컨대, 홍콩정부는 홍콩국제중재센터를 위하여 법률적·제도적 지원 이외에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는데, 홍콩정부는 홍콩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정부소유빌딩(Central의 Exchange Square 빌딩)에 홍콩중재센터를 입주시키면서 연 HK \$1의 상징적인 임차료만을 받고 있다(오현석, “아시아 국제중재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홍콩의 전략”, 『중재』 329호, 대한상사중재원, 2009.9, 80면).
- 2) 장승화,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한 제언”, 『중재』 330호, 대한상사중재원, 2009.12, 4면.
- 3) 박범철·주이화·심상렬, “신속절차에 관한 아시아 4개국의 국제중재규칙 비교 연구” -CIETAC, HKIAC, SIAC, KCAB를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3.3, 178면; “2010 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 : Choic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Schoo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2010, pp.22-23.
- 4) 함영주, 『분쟁해결방법론』, 진원사, 2010, 310면.
- 5) 우리나라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ICC에 신청한 건수는 360건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276649> 접속일 2014.4.25.)
- 6) ICC 중재절차에 관하여 대표적인 것으로, 하충룡, “한국과 ICC간 중재비용에 관한 분석”, 『중재학회지』 제10권, 한국중재학회, 2000.11; 이재우, “ICC중재관정”, 『중재』 295호, 대한상사중재원, 2000.3; 오원석·김용일, “ICC중재에서 중재인 선정과 확인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7.8; 김갑유,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규칙 주요 개정내용”, 『법률신문』 3980호, 법률신문사, 2011.11; 박원형,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의 개정동향 : ICC중재규칙의 개정과 비교하여”, 『중재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2.8 등이 있다.
- 7) CIETAC 중재절차에 대하여는, 윤진기, “2005년 CIETAC 중재규칙 개정과 중국 중재법상의 문제점 개선”, 『중재연구』 제16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6.11; 신군재, “KCAB 개정 중재규칙과 CIETAC 중재규칙의 비교 연구”, 『중재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8.8. 참조.

있지만, SIAC의 중재절차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sup>8)</sup> 본고에서는 싱가포르의 국제 중재제도에 관하여 SIAC의 중재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sup>9)</sup>

## II. 싱가포르의 중재지로서의 의의

아시아의 많은 국가의 기업들 간의 거래에 있어서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를 중재기관으로 선호하는 이유는 싱가포르가 중재지로서 다른 국가보다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1. 법적 기반

싱가포르의 중재는 중재법(Arbitration Act, Chapter 10)과 국제중재법(International Arbitration Act, Chapter 143A)<sup>10)</sup>에서 규율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1986년 8월에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조약(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한다)을 비준하였고, 싱가포르를 중재지로 한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에 가맹한 149개 국가<sup>11)</sup>에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싱가포르의 국제중재법에서는 모델법이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규정하고 있는 장을 제외하고는 싱가포르에서도 유효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국제중재법 제3조). Maxwell Chambers에 의하여 행해진 조사에 의하면, 2009년 8월의 개소시부터 2011년 10월말까지 사이에 Maxwell Chambers에 의하여 행해진 중재 중 82%가 국제중재법, 18%가 중재법에 기초한 중재라고 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국제중재법이 적용되는 중재에 관해서는 법원의 개입이 법률상 제한되어 있으며,<sup>12)</sup> 싱가포르법원은 중재절차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sup>13)</sup>

8) SIAC 중재절차에 관한 연구논문으로서, Henny Mardiani, “Arbitration in Singapore”, 「중재연구」 제16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6.3, 217-230면이 있고, 특정부분에 관하여 비교연구한 논문으로서, 박범철·주이화·심상렬, 전제논문, 177면 이하; 주이화, “신속절차에 관한 아시아 4개국의 국제중재규칙 비교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2; 김도훈, “긴급중재인제도에 관한 소고: 국제중재기관들의 긴급중재인제도에 관한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62호, 2013.4, 198면 이하 등이 있다.

9) 이에 대하여 일본문헌으로서, 栗田哲郎, “シンガポール國際商事仲裁(上・下)”, 「國際商事法務」 40卷 5號, 6號, 國際商事法務研究所, 2012.5.6, 683面; 青木大, “シンガポール國際仲裁の實務(1)-(5)”, 「國際商事法務」 41卷 10號- 42卷 2號, 國際商事法務研究所, 2013.10-2014.2. 등이 있다.

10)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은 UNCITRAL 국제상사중재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이하 ‘모델법’이라고 한다)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11) [http://www.uncitral.org/uncitral/en/uncitral\\_texts/arbitration/NYConvention\\_status.html](http://www.uncitral.org/uncitral/en/uncitral_texts/arbitration/NYConvention_status.html).(접속일 2014.5.23.)

12) 중재지 법원이 중재판정을 취소한 경우 그 중재판정을 다른 나라에서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다. 또한 중재지 법원이 적극적으로 중재절차에 개입하는 것을 인정하는 국가도 있다. 따라서 중재지를 선택할 때에는 중재지 법원이 중재판정 취소나 중재절차 정지 등 그 개입이 법률상 제한되어 있고, 실제로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국가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 2. 국가의 지원

싱가포르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고 있으며, 부패지수가 낮은 나라로 알려지고 있다.<sup>14)</sup> 싱가포르의 거국적으로 중재의 허브로서의 지위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국토가 협소하고 천연자원이 적은 싱가포르가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지적산업의 허브화’라는 국가정책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legal service라는 고도의 지적산업의 중심으로서 많은 다국적 기업의 본부, 저명한 법률사무소를 싱가포르에 유치하기 위하여 보다 좋은 환경을 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거국적인 국가 지원의 대표적인 예로서, 2009년 8월에 개소한 Maxwell Chambers<sup>15)</sup>을 들 수 있다. Maxwell Chambers 건물은 원래 싱가포르 법무성 소유이지만 Maxwell Chambers Pte Ltd라는 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Maxwell Chambers에는 SIAC는 물론 많은 중재관련 기관들이 입주하고 있으며,<sup>16)</sup> 또한 Maxwell Chambers의 파트너로서, 투자분쟁해결국제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상설중재법원(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sup>17)</sup> 런던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sup>18)</sup> 영국중재인협회(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sup>19)</sup> 등이 있다. 이러한 중재기관뿐만 아니라 저명한 중재인 개인사무소, 싱가포르중재인협회, 법정속기나 번역을 하는 Merrill Corporation Asia Limited 등도 입주하고 있다.<sup>20)</sup>

13) 예컨대, Mitsui Engineering and Shipbuilding Co Ltd v Easton Graham Rush & Anor 2004 2SLR14에서, 싱가포르고등법원은 법원이 중재에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법원에 의한 중재절차의 잠정적인 정지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PT Garuda Indonesia v Birgen Air 2002 1 SLR 393에서는,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34조에 기한 중재판정의 취소는 싱가포르 국내중재판정에 관해서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AJT v AJU 2010 SGHC 201에서는, 공서양속위반은 ‘shock the conscience’, ‘clearly injurious to the public good’, ‘fundamental notions and principles of justice’라고 하여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14) 싱가포르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PI)가 2013년 실시한 ‘부패인식지수조사’에서 투명성이 높은 국가 5위를 차지했다(덴마크, 뉴질랜드가 1위). 싱가포르는 2010년도 조사에서 덴마크, 뉴질랜드와 공동 1위를 차지한 바 있다([www.transparency.org](http://www.transparency.org)).

15) <http://www.maxwell-chambers.com/>

16) 여기에는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ICC), 싱가포르국제분쟁해결센터, 세계지적소유권기관, 싱가포르해사중재(SCMA), 기타 저명한 중재인 사무소 등이 입주하고 있다.

17) 상설중재법원은 1899년 헤이그평화회의와 국제분쟁평화적처리조약에 기하여 1913년에 창설된 주권국가가 관계하는 국제중재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국제중재재판이란 국가간의 분쟁 당사국이 법정을 설치하여 임의로 선택한 중재법원이 제3자적 입장에서 이를 처리하는 유엔의 기관이다.

18) <http://www.lcia.org/>

19) <http://www.ciarb.org/>

20) Maxwell Chambers에는 최첨단 회의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기록, 통·번역서비스, 해외에 있는 증인의 신문을 위한 비디오링크시스템 등 실무상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3. 상설중재기관과 중재자원

싱가포르에는 상설중재기관인 SIAC의 사무국과 중재법원이 있으며, ICC의 창구도 Maxwell Chambers에 있다.<sup>21)</sup> 또한 싱가포르는 정책적으로 세계 각국의 법률사무소를 유치하고 있고, 법률적·기술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나 전문가가 많이 있어 중재인 자원이 풍부하다. 싱가포르에서는 법률상 외국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도 싱가포르의 중재법, 국제중재법에 따른 중재안건을 수임하거나 조언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받지 않는다. 쟁점이 되는 계약의 준거법이 싱가포르 이외의 외국법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 국제중재에 있어서는 각국의 변호사 자원이 많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4. 지역적·지리적 기반

싱가포르에 거점을 둔 약 7,000여개의 기업 대부분이 다국적기업이고, 싱가포르는 아시아 사업의 허브로서 위치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외국계 기업이 싱가포르에 지역총괄회사를 두고 있다. 나아가 많은 기업이 싱가포르에 아시아 전역에 대한 법무·compliance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싱가포르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할 수 있다.<sup>22)</sup> 싱가포르는 지리적으로 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싱가포르의 창이(Changi)국제공항에서는 100여개의 항공사가 259개 도시로 주 4,000편 이상의 정기항공편을 취항하고 있으며 연간 5,10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그 때문에 중재인이나 대리인의 이동이 매우 편리하다.<sup>23)</sup> 싱가포르는 영어가 공용어이고, 기타 말레이시아어, 중국어, 타미르어 등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 III.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의 개요

### 1. SIAC의 지위와 역할

SIAC는 1991년 싱가포르 회사법상 유한보증회사로서 설립된 상설중재기관이다. 정부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하여 현재 싱가포르 정부와의 관

21) ICC의 본부는 파리에 있지만, 2008년부터 ICC의 아시아지부가 홍콩에 설립되었으며, 싱가포르에는 ICC의 창구는 있지만 ICC사무국은 존재하지 않아서 ICC 중재절차 신청의 접수, 판리는 파리나 홍콩에서 행하고 있다.

22) 홍콩도 많은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고 있지만 아시아 전역의 지역총괄거점이라기 보다는 중국에의 입구로서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23) 한국에서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인천공항과 창이공항을 운항하고 있다.

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는 싱가포르비즈니스연합회(Singapore Business Federation)<sup>24)</sup>가 SIAC의 유한보증인으로 되어 있다. Maxwell Chambers에 따르면, 2009년 8월부터 2011년 말까지 행해진 중재를 중재기관별로 볼 때, SIAC 51%, ICC 14%, SCMA 3%, LCIA 1%, 기타 31%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5)</sup>

SIAC는 상설중재기관으로서 SIAC중재규칙에 기하여 중재의 관리사무를 맡고 있다. SIAC규칙뿐만 아니라 ICC규칙, SMCA규칙에 의한 중재사건도 담당하고 있다.<sup>26)</sup> SIAC는 ad hoc중재에서 중재인을 선임하는 업무도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중재에 관한 모든 관리 사무 서비스(경비관리, 사무절차관리 등)도 하고 있다.

## 2. SIAC의 구성

SIAC은 이사회, 중재법원,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sup>27)</sup> 이사회(Board of Directors)는 SIAC 의장(Chairman), 부의장(Deputy Chairman), 이사가 있는데, 이사들은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한국,<sup>28)</sup> 싱가포르, 스위스, 영국, 미국 등의 법률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sup>29)</sup> 중재법원(Court of Arbitration of SIAC)<sup>30)</sup>은 법원장(President), 부원장(Vice-President)과 상임위원 등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sup>31)</sup> 중재법원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설립되었으며, 중재인들의 자격을 심사하여 선정하고 그 선임과 관련한 이의를 심판하는 역할, 중재 절차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국제중재의 정책과 법제를 결정하는 총괄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사무국(Secretariat)에는 최고경영책임자(Chief Executive Officer), 사무총장(Registrar) 및 부총장(Deputy Registrar)과 8명의 중재서기(Counsel)로 구성되어 있다.<sup>32)</sup>

24) <http://www.cbf.org.sg/>

25) 栗田哲郎, 前掲論文(上), 691面.

26)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ICC와 중재합의 유효성을 다투는 사안에서 당해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Insignia Technology Co. Ltd v Alstom Technology Ltd 2009, SGCA 24)

27) SIAC은 이사회, 자문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되고 있었는데, 2013년 4월에 중재법원이 설립되면서 종래의 이사회나 이사위원회의 기능을 중재법원에, 사무국(사무총장)의 기능의 대부분을 법원장에게 부여하도록 조정하고 있다(SIAC규칙 1.3조).

28) 현재 한국인 이사로 법무법인 김앤장의 박은영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29) 여기에는 2명 이하로 구성되는 이사위원회(Committee of the Board)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 개정규칙에서는 이사위원회의 기능도 법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30) 여기에서의 중재법원(Court of Arbitration)은 국가의 사법부로서의 법원이 아니라 SIAC의 중재법원(Court of Arbitration of SIAC)을 말하며, 일본에서는 이를 중재재판소라고 번역하고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중재법원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마찬가지로 법원장(President)도 일본에서는 재판소장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법원장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31) 우리나라의 임성우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SIAC중재법원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32) 우리나라의 유지연 변호사가 SIAC의 head Counsel로 활동하고 있다.

### 3. SIAC의 중재건수

SIAC의 중재건수를 살펴보면, 2000년 58건, 2001년 64건, 2002년 64건, 2003년 64건, 2004년 78건, 2005년 74건, 2006년 90건, 2007년 86건, 2008년 99건, 2009년 160건, 2010년 198건, 2011년 188건이었다. 2011년의 신청금액의 합계는 13억싱가포르달러이고, 평균 신청금액은 약 700만싱가포르달러이다.

2011년도에 SIAC에 신청된 중재사건을 종류별로 분류해보면, 상업법관련 23%, 거래법 관련 22%, 선박법관련 13%, 건설관련 23%, 회사법관련 13%, 은행법관련 1%, 보험관련 2%, 기타 3%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sup>33)</sup>

한편, 2011년도에 신청된 중재사건의 당사자(신청인·피신청인)의 국적별로 분류해 보면, 싱가포르 79명, 영국 39명, 인도 24명, 홍콩 23명, 중국 20명, 인도네시아 20명,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 13명, 말레이시아 12명, 미국 11명, 네덜란드 8명, 일본 7명, 한국 7명, 스위스 7명, 오스트레일리아 5명, 그리스 5명, 아랍 에미레이트 5명, 노르웨이 4명, 태국 4명, 모리셔스 3명, 베트남 3명 방글라데시 2명, 필리핀 3명, 캄보디아 2명, 캐나다 2명, 카이만 아일랜드 2명, 사모아 2명, 대만 2명, 브리티시 웨스트 인디아 1명, 사이프러스 1명, 핀란드 1명, 독일 1명, 이스라엘 1명, 이탈리아 1명, 마카오 1명, 마셜군도 1명, 네덜란드 안틸레스 1명, 북한 1명, 파나마 1명, 폴란드 1명, 스페인 1명, 스리랑카 1명 등 41개국 당사자들로 나타나고 있다.<sup>34)</sup>

### 4. SIAC 중재규칙

SIAC 중재규칙은 모델법에 기초하여 런던국제중재법원규칙을 참고로 작성되었고, 최근에만 두 차례 개정되었다. 우선 2010년 7월에 제4차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때 개정된 주요내용은 ① 긴급중재(Emergency Arbitration)와 신속절차(Expedited Arbitration)의 도입,<sup>35)</sup> ② 다수당사자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sup>36)</sup> ③ 쟁점사항서에 관한 규정 삭제,<sup>37)</sup> ④ 중재인의 해임절차 규정,<sup>38)</sup> ⑤ 중재관할권에 대한 이의 규정<sup>39)</sup> 등이다. 2013년 4월 1일에

33) 栗田哲郎, 前掲論文(上), 692面.

34) 栗田哲郎, 上掲論文(上), 692面. 당사자는 법인인 경우가 많을 것이나 단위를 ‘명’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35) 긴급중재와 간이중재절차에 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한다.

36) 다수당사자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중재에서 2명 이상의 당사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3명의 중재인이 선임될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에 중재인을 지명하도록 하였다. 신청인들은 공동으로 1명의 중재인을 지명해야 하고, 또한 피신청인들도 공동으로 1명의 중재인을 지명해야 한다(SIAC규칙 9.1조).

37) 모든 주장서면을 교환한 후, 양당사자는 쟁점사항서(Memorandum of Issues, 이하 ‘MOI’라 한다)이라는 쟁점을 정리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었는데, 이 규정을 삭제하여 보다 신속한 분쟁의 해결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루어진 제5차 개정은 SIAC에 중재법원이 설립되면서 중재법원의 역할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sup>40)</sup>

#### IV. SIAC의 국제중재절차

SIAC 중재규칙은 모델법을 준거로 하고 있어서 SIAC의 국제중재절차는 다른 국제중재기관의 중재절차와 거의 같다. 다만 몇몇 SIAC 독자적 규칙을 가지고 운용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는 2013년 4월 1일에 개정된 SIAC 중재규칙(제5판)<sup>41)</sup>을 중심으로 중재절차의 개요를 살펴보고자 한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ICC의 중재규칙이나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이하 'KCAB 규칙'이라고 한다)과의 차이점을 언급하고자 한다.<sup>42)</sup>

##### 1. 중재의 신청

###### (1) 중재신청서의 제출

중재는 중재신청서(Notice of Arbitration)의 송달로 개시된다. 중재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신청인)는 SIAC의 사무총장(Registrar)에게 중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SIAC규칙 3조 1항).<sup>43)</sup> SIAC에서는 사무총장이 하자 없는 중재신청서 및 신청비용을 접수한 날을 중재 개시일로 본다(동 규칙 3.3조).<sup>44)</sup> 이 중재신청서에는 나중에 설명하는 청구진술서

38) 중재인이 부당하게 사건처리를 지연시킨 경우, 당사자와 협의한 후 재량으로 중재인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SIAC규칙 14.3조). SIAC의 감독권한을 강화시킨 것이다.

39)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도 중재판정부의 관할에 대한 이의의 소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SIAC규칙 25.1조), 절차의 신속화를 꾀하고 있다.

40) SIAC의 모델중재조항은 다음과 같다.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including any question regarding its existence, validity or termination, shall be referred to and finally resolved by arbitration in Singapore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SIAC Rules") for the time being in force, which rules are deemed to be incorporated by reference in this clause. The Tribunal shall consist of -----arbitrator(s). The language of the arbitration shall be -----.

41) <http://www.siac.org.sg/our-rules/rules/siac-rules-2013> (접속일 2014.4.20.)

42) ICC 중재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규칙을 참고로 하며, KCAB 중재규칙은 2011.6.29. 대법원승인(2011.9.1.발효)된 국제중재규칙을 참고로 한다.

43) 중재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① 중재를 신청하는 취지, ②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메일주소. ③ 적용되는 중재조항 및 그 사본. ④ 청구에 관계되는 계약서 및 그 사본. ⑤ 분쟁의 성질 및 상황, 청구하는 구제방법, 청구의 초기 산정액. ⑥ 중재의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⑦ 중재인의 수, ⑧ 중재인의 지명 또는 제안, ⑨ 적용되는 준거법에 관한 의견, ⑩ 중재에서 사용될 언어에 관한 의견, ⑪ 필요한 신청수수료의 납부(신청수수료는 2013년 9월부터 1건당 2,000싱가포르 달러이며, 국내당사자는 7%의 소비세를 더하여 2,140싱가포르 달러이다).

44) ICC는 사무국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중재 개시일로 보고 있고(ICC규칙 4.2조), KCAB 규칙 또한 같다(KCAB 규칙 8조 2항). 한편, 모델법에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서를 수령한 날이 중재 개시일로 되어 있다(모델법 21조).



(Statement of Claim)의 내용도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동 규칙 3.2조)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2) 중재신청서의 송달

신청인은 중재신청서의 사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신청인은 송달방법 및 송달일을 특정한 후 SIAC 사무총장에게 송달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동 규칙 3.4조). SIAC 규칙은 모든 통지·연락·제안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서면에 의한 연락은 우편이나 택배로 배달하거나, 모든 전자통신 수단(전자메일 및 팩스 등)으로 송신하거나, 기타 배달기록이 남는 수단으로 배달하는데, ① 당사자에게 직접 교부, ② 수신인의 주소나 사업소, 또는 지정된 주소, ③ 당사자 간에 합의된 주소, ④ 종전의 거래에서 당사자의 관행에 따른 장소, ⑤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경우, 수신인의 최후의 거주지 또는 사업소에 배달된 때에 수령된 것으로 보고 있다(동 규칙 2.1조). 이들 통지에 관해서는 송달주의가 채용되고 있다(동 규칙 2.2조).

(3) 예납금의 납부

SIAC의 중재비용은 ① 중재판정부의 보수 및 비용, ② SIAC의 관리요금 및 비용, ③ 전문가 및 기타 보조자의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동 규칙 31.2조). 중재판정부의 보수와 SIAC의 관리요금은 SIAC규칙에서 상한을 정하고 있으며, 중재판정부 보수의 최종적 결정권한은 사무총장에게 있다.

< 중재비용 비교표><sup>45)</sup>

분쟁금액	구분	SIAC	ICC	
			하한	상한
10,000	계	8,750	6,000	6,000
	사무관리수수료	3,250	3,000	3,000
	중재인비용	5,500	3,000	3,000
100,000	계	18,112	9,690	21,159
	사무관리수수료	4,536	5,365	5,365
	중재인비용	13,576	4,325	15,794
1,000,000	계	78,916	36,342	85,845
	사무관리수수료	14,183	21,715	21,715
	중재인비용	64,733	14,627	64,130
10,000,000	계	190,817	96,682	244,915
	사무관리수수료	35,650	57,515	57,515
	중재인비용	155,167	39,167	187,400
100,000,000	계	397,701	177,082	450,515
	사무관리수수료	66,500	99,215	99,215
	중재인비용	331,201	77,867	351,300

(2013.12.기준, 단위 USD)

45) 栗田哲郎, 前掲論文(上), 853面.

SIAC의 사무총장은 당사자에게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중재비용의 추가 예납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동 규칙 30.4조).<sup>46)</sup> 사무총장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예납금의 50%는 신청인이, 나머지 50%는 피신청인이 지급해야 하는데(동 규칙 30.2조), 만약 피신청인이 예납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중재절차를 속행하려면 신청인이 예납금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 (4) 답변서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후 14일 이내에 답변서(Response)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sup>47)</sup> 이 답변서에는 SIAC규칙 17조에서 정하는 항변진술서(Statement of Defence)에 기재할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거의 포함되지 않는다.<sup>48)</sup>

## 2. 중재인 선정

재판과는 달리 전문성을 가진 중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이 중재의 최대의 장점의 하나이고 어떠한 경력, 자격, 국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중재인을 선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건의 결과에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1) 중재인 패널

SIAC은 공인중재인패널(Panel of Accredited Arbitrators)이라는 중재인후보자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sup>49)</sup> 중재인은 반드시 이 패널에 등록된 중재인만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중재인 자격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SIAC은 국제중재의 경우 제3국 국적을 가진 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도록 철저히 지도를 행하고 있다(당사자 쌍방이 싱가포르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싱가포르 중재인이 선임되고 있다). SIAC은 선임된 중재인으로 하여금 독립성의 보증서(Undertaking)에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sup>50)</sup>

46) SIAC에서는 예납금을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제1단계 : 중재절차 신청 직후, 예납금 상한의 35%, 제2단계 : 중재판정부 구성 직후, 예납금 상한의 35%, 제3단계 : 증인신문 직전, 예납금 상한의 30%.

47) ICC규칙은 30일 이내에 답변서(Answer)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동 규칙 5조①). KCAB규칙이나(동 규칙 9조) 모델법도 마찬가지이다(동규칙 43조①).

48) 답변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청구에 대한 인용 또는 부인. ② 반대청구의 성질 및 상황, 청구하는 구제방법, 반대청구의 초기산정금액, ③ 중재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진술에 대한 의견, ④ 중재인의 지명, 또는 신청인의 중재인의 제안에 대한 합의 또는 반대제안(동 규칙 4.2조).

49) 2014년 4월 현재 SIAC에 등록된 중재인 패널은 38개 국가의 372명이며,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중재인도 7명이 포함되어 있다.

50) ICC는 중재인에게 '독립성의 선서(Statement of Independence)'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ICC규칙 9.2조).

## (2) 중재인 지명과 선정권한

당사자 간에 중재인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도 이러한 합의는 지명(nomination)이고, 최종적인 선정(appointment)권한은 SIAC중재법원장의 재량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동 규칙 6.3조, 6.4조)<sup>51)</sup> SIAC에서는 단독중재인이 선임되는 것이 원칙이다. 즉 당사자 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혹은 사무총장이 사안(당사자의 제안, 복잡성, 관련하는 금액, 분쟁에 관한 상황 등)을 고려한 결과 3인의 중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단독중재인이 선임된다(동 규칙 6.1조).<sup>52)</sup>

## (3) 단독중재인의 선정

단독중재인이 선임되는 경우, 당사자 간에 중재인 지명에 관한 합의를 하게 되는데, 사무총장이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후 21일 이내에 당사자 간에 중재인 지명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SIAC중재법원장이 중재인을 선임한다(동 규칙 7.2조).<sup>53)</sup>

## (4) 3명의 중재인의 선정

3명의 중재인이 선임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지명하는데(동 규칙 8.1조), 신청인은 중재신청서에서(동 규칙 3.1조), 피신청인은 답변서에서(동 규칙 4.1조) 중재인을 지명해야 한다.<sup>54)</sup>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지명이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또는 당사자 간에 특별히 합의한 방법에 따라서) 지명을 하지 않은 경우 SIAC중재법원장이 대신하여 중재인을 선임한다(동 규칙 8.2조). 당사자가 제3의 중재인 선임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합의된 절차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SIAC에 의하여 결정된 기간 내에 지명되지 않을 경우, 의장중재인이 될 제3의 중재인은 SIAC중재법원장이 선임한다(동 규칙 8.3조).<sup>55)</sup>

51) ICC에서는 단독중재인, 의장중재인을 결정할 때 ICC 국내위원회의 추천으로 ICC중재법원이 선임한다(ICC 규칙 9.3조). 개정 전 SIAC중재규칙에서는 SIAC의장의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구 SIAC 규칙 6.3조), 이것이 ICC와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였다.

52) ICC도 원칙적으로 단독중재인이 원칙이다(ICC규칙 12.2조). KCAB도 마찬가지이다(동 규칙 11조). 단독중재인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중재인의 보수에 관한 비용 때문으로 인식되고 있다. 모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3명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모델법 규칙 7조①).

53) 대개 중재신청서 수령후 1개월 내외에 SIAC에 의하여 중재인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青木大, 前掲論文(3), 1825面). ICC는, 당사자의 합의로 단독중재인을 지명하고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중재신청서를 피신청인이 수령한 후 30일 이내 단독중재인을 합의로 지명하지 않은 경우 중재법원이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ICC규칙 12.3조).

54) ICC에서는 각 당사자가 신청서 및 답변서에서 각각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하고 중재법원의 확인(Confirmation)을 받아야 하며, 의장중재인은 원칙적으로 ICC중재법원이 선임한다(ICC규칙 12.5조). 한편, 당사자가 지명한 중재인은 불편부당성, 독립성 등에 관한 진술해야 하며, 불충분한 경우 중재법원은 중재인을 불승인하기도 한다. 小田博, 「ICC仲裁におけるICC國際仲裁裁判所の役割」, 「仲裁・ADRフォーラム」, 第4巻, 2013, 102面に 의하면, ICC중재법원이 당사자가 지명한 중재인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는 적어도 연간 20-30건에 달한다고 한다.

55) 개정 전에는 SIAC의장이 대신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 (5) 중재인의 기피

중재인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합리적인 의문이 생기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또는 중재인이 당사자들이 합의한 필요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중재인은 기피될 수 있다(동 규칙 11.1조). 당사자는 자신이 지명한 중재인에 대하여는 선임이 이루어진 후에 그 당사자가 알게 된 사유에 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동 규칙 11.2조). 기피통지를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타방 당사자가 기피에 합의하지 않거나 또한 기피대상 중재인이 자발적으로 사임하지 않은 경우, SIAC중재법원이 기피에 관하여 결정해야 한다(동 규칙 13.1조). 이 SIAC중재법원의 결정은 중국적이고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동 규칙 13.5조).<sup>56)</sup>

## (5) 중재인 등의 면책

중재법원장, 법원의 상임위원, 이사, 집행원, 중재서기 또는 중재인을 포함한 중재관계자는 누구에 대하여도 SIAC규칙에 따라서 행해진 중재와 관련하여 과실, 작위, 부작위에 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동 규칙 34조).<sup>57)</sup>

## 3. 준비회의 개최

중재판정부(Tribunal)가 구성되면 가능한 한 빨리 준비회의(preliminary meeting)를 개최한다(동 규칙 16.3조). 이 회의는 중재인과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전화회의를 열기도 한다.<sup>58)</sup> 여기에서 중재판정부는 절차의 순서, 절차의 분리, 중복 또는 관련성 없는 증거의 배제 등 절차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동 규칙 16.4조). 이 단계에서 쌍방의 주장서면이나 증거의 제출기간, 증거조사나 문서개시에 관한 기본방침, 심문일정, 증인신문의 기본방침 등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석명사항(Procedural Order)’의 형식으로 당사자에게 전달하게 된다.<sup>59)</sup>

56) ICC는 중재인 선임 또는 선임확인통지를 당사자가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기피를 신청한 당사자가 기피의 사유가 되는 사실 및 상황을 안날이 통지를 수령한 날보다 나중인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피신청서를 송부해야 하며(ICC규칙 14.2조), ICC중재법원은 기피신청의 적부나 기피의 당부에 관하여 결정해야 한다(동 규칙 14.3조). 한편, KCAB는 일방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사실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해당 당사자가 기피의 원인이 된 사유와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동 규칙 13조 3항).

57) ICC에도 같은 면책규정이 있다(ICC규칙 40조). KCAB의 경우, “중재인과 사무국 임직원은 이 규칙에 따라 진행된 중재와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규칙 51조).

58) 青木大, 前掲論文(3), 1826面.

59) ICC도 사전에 Case Management회의 개최를 의무로 하고 있다(ICC규칙 24조).

#### 4. 전제사항 결정

##### (1) 준거법의 결정

중재판정부는 당해 분쟁의 실체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지정한 준거법을 적용해야 한다. 당사자가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동 규칙 27.1조).

##### (2) 중재 언어의 결정

당사자 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중재판정부가 당해 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결정한다(동 규칙 19.1조). 서면이 결정된 언어 이외의 언어로 쓰인 경우 중재판정부(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사무총장)는 당사자에게 결정의 형식으로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동 규칙 19.2조).

##### (3)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대한 결정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중재합의의 존재, 그 유효성 또는 범위, 청구권, 반대청구나 상계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청구권에 관한 SIAC의 관할권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중재법원은 그 증거능력 또는 청구권의 실체에 대한 판단과는 관계없이 SIAC규칙상 중재합의 존재가 소명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중재법원이 소명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중재절차는 종료된다(동 규칙 25.1조).

##### (4) 중재판정부의 관할의 결정권

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의 존재, 종료 또는 유효성에 대한 이의를 포함하여 자신의 관할권에 관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동 규칙 25.2조).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항변은 방어방법진술서 또는 반대청구에 대한 방어방법진술서보다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동 규칙 25.3조). 이렇게 중재판정부의 관할에 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중재판정부 자신이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5. 주장서면 · 증거의 제출

##### (1) 청구진술서, 항변진술서 등의 제출

신청인은 중재판정부가 결정한 기간 내에 ① 청구원인이 되는 사실, ② 청구원인이 되는 법적근거 또는 주장, ③ 청구하는 구제방법 및 산정가능한 청구금액 등을 기재한 청구진술서(Statement of Claim)를 제출해야 한다(동 규칙 17.2조). 청구진술서가 제출된 후 피

신청인은 중재판정부가 결정한 기간 내에 청구진술서에 대한 모든 항변을 기재한 항변진술서(Statement of Defence)를 제출해야 한다. 반대청구가 있으면 항변진술서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동 규칙 17.3조).<sup>60)</sup> 피신청인이 반대청구를 한 경우 신청인은 중재판정부가 결정한 기간 내에 반대청구에 대한 항변진술서(Statement of Defence to the Counterclaim)를 제출해야 한다(동 규칙 17.4조).<sup>61)</sup>

## (2) 증거의 제출

위의 주장서면에서는 근거로 되는 증거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동 규칙 17.7조). 중재판정부는 모든 증거의 관련성, 중요성 및 증거능력을 결정한다. 증거는 법률상의 증거능력을 가질 필요는 없다(동 규칙 16.2조). 그러므로 서증의 경우,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서면이나 전자메일,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 내에서나 제3자와 주고받은 문서나 전자메일도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제출할 수 있다.<sup>62)</sup>

## 6. 문서개시 절차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12조 1항((b)는, 문서개시절차에 관하여 중재판정부가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SIAC 중재규칙 제24조(g)는 “당사자에 대하여 중재판정부가 당해 사안에 관련이 있고, 그 결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일체의 서류로, 당사자가 소지하거나, 또는 그 지배하에 있는 것을 중재판정부 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열람하도록 제출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sup>63)</sup>

### (1) 세계변호사협회(IBA) 증거조사규칙

국제중재법 및 SIAC중재규칙에는 문서개시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없다. ICC중재규칙, 모델법 중재규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문서개시 절차는 기본적으로 중재판정부의 광범위한 재량에 위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중재판정부는 석명사항 등에

60) 이에는 SIAC규칙 17.2조의 요건, 즉 청구진술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61) 여기에는 반대청구진술서의 모든 사실 및 법률상 쟁점의 인정 또는 부인 여부, 어떠한 근거에 기하여 청구 또는 쟁점에 관하여 부인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청구진술서 및 항변진술서가 제출된 후 각각 1회 정도의 반문서면이 제출로 당사자의 주장기회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青木大, 前掲論文(3), 1827面).

62) 青木大, 上掲論文(3), 1827面.

63) 문서개시절차가 행해지는 것은 common law계의 중재인이나 당사자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싱가포르 국제중재에서는 양당사자가 합의로 배제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청구진술서, 항변진술서 등의 주장서면을 교환하는 단계에서 문서개시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青木大, 前掲論文(4), 79面).

서 IBA의 국제중재 증거조사규칙(Rules on the Taking of Evidence in Interational Arbitration,<sup>64)</sup> 이하 ‘IBA 증거규칙’이라 한다)을 참조할 것을 명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많은 중재인이 이를 중시하고 있다.<sup>65)</sup>

## (2) 절차의 범위

문서개시 절차의 범위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중재인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그 범위는 중재인이 결정한다. SIAC에 의하면, 어디까지나 문서개시 절차의 범위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IBA 증거규칙 등을 기초로 중재인의 재량에 맡기고 있지만, 미국의 재판절차에서 행해지는 것과 같은 광범위하게 상세한 증거개시제도(discovery)가 행해지는 것은 매우 드물다고 한다.<sup>66)</sup>

## 7. 쟁점사항 문서

쟁점사항서(앞에서 설명한 ‘MOI’<sup>67)</sup>)는 어떤 점이 쟁점으로 되는지 쌍방이 합의하고 열거함으로써 당사자 및 중재판정부가 인식을 공유하고 쟁점해결에 전념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이 MOI절차는 실제로 쟁점정리를 위하여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그래서 SIAC규칙은 2007년 7월의 규칙개정에서 작성을 의무화하였던 MOI에 대하여 2010년 10월의 제4차 개정에서 보다 신속한 중재절차를 위하여 그 작성의무를 폐지하였다.<sup>68)</sup>

## 8. 심문기일 및 증인신문

당사자가 서면으로만 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구술 주장이나 증인신문을 하기 위한 심문기일이 열린다(동 규칙 21.1조). 일방당사자가 심문기일에 결석한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제출된 주장이나 증거에 기초하여 중재를 속행한다(동 규칙 21.3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전문가증인을 포함한 증인의 경력, 증언의 내용, 쟁점과의 관련성 등에 관하여

64) <http://www.ibanet.org/Document/Default.aspx?DocumentUId=68336C49-4106-46BF-A1C6-A8F0880444DC> 참조. IBA 증거규칙은 IBA가 각국의 중재전문가를 위원으로 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하고 2010년 5월 29일 IBA이사회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이 전신으로서 1999년에 공표된 ‘IBA국제상사중재증거조사규칙’이 있다.

65) IBA 증거규칙에 구속되는 것으로 하면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한 중재판단 취소의 위험이 클 수 있으므로 이를 단지 가이드라인으로 참조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판단에서는 중재판정부의 재량을 가지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青木大, 前掲論文(4), 87面).

66) 栗田哲郎, 前掲論文(上), 858面.

67) 전제 각주 37) 참조.

68) 다만 실무에 있어서는 당사자나 중재판정부의 요청으로 MOI가 작성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한편, ICC규칙은 이 MOI는 TOR(Terms of Reference)이라고 하는데 이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당사자 및 중재인의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ICC규칙 23조).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동 규칙 22.1조). 그리고 중재판정부는 증인의 출석을 허가·각하·제한할 재량을 가진다(동 규칙 22.2조).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모든 심문기일 기타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그 내용의 기록 또는 사용된 서면에 대하여는 비밀로 해야 한다(동 규칙 21.4조). 다만 중재판정은 SIAC의 판단에 의하여 당사자 성명 및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편집하여 공표할 수 있다(동 규칙 28.10조).

통상 심문은 양당사자의 변호사의 모두진술(opening statement), 증인신문(사실증인 및 전문가증인), 변호사의 최종진술(closing statement) 순으로 진행되지만, 최종진술을 하지 않고 증인신문의 결과를 기초로 최종주장서면을 제출하도록 명해지기도 한다.<sup>69)</sup> 증인신문의 방법이나 순서는 중재판정부의 재량으로 정한다. 구술로 증언한 증인에 대하여 쌍방 당사자, 그 대리인 및 중재인은 중재판정부가 결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문할 수 있다(SIAC 규칙 22.3조). 신문은 일반적으로, ①주신문(Examination), ②반대신문(Cross-Examination), ③재주신문(Re-Examination)의 순서로 행해진다. 일반적으로는 이른바 주신문은 매우 간결하게 이루어지고 상대방 대리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중심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진술서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해서는 중재판정부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sup>70)</sup>

증인신문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중재판정부는 진술서를 무시 또는 배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청구된 증인은 모두 출석해야 한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진술서를 제출한 증인은 모두 신문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제3자의 전문가증인 등을 의뢰한 경우, 일정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다만 중재판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IBA 증거규칙은 화상회의에 의한 증인신문도 인정하고 있다(IBA 증거규칙 8조①).<sup>71)</sup>

## 9. 중재판정

### (1) 중재판정의 심사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와 협의한 후 당사자가 더 이상 관련성 있는 중요한 증거나 제출할 주장이 없다고 확신한 경우 절차의 종결을 선언해야 한다(SIAC 규칙 28.1조).<sup>72)</sup> 중재판정부는 사무총장이 기간을 연장하거나 당사자 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절차의 종결

69) 青木大, 前掲論文(4), 85面. 증인신문 후 최종 주장서면 제출기회 부여 여부도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의하지만, 일반적으로 최종 주장서면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다.

70) SIAC 규칙 22.4조는, “모든 당사자는 진술서를 제출한 증인에게 구술신문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바에 의하여 진술서에 의한 증언에 비중을 두거나 그것을 무시 또는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1) 青木大, 前掲論文(4), 85面.

72) 통상은 심문절차 후 또는 심문절차 후 최종주장서면 제출이 명해진 경우는 그 후에 중재절차의 종결이 선언되게 된다.



을 선언한 후 45일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중재판정 초안을 제출해야 한다(동 규칙 28.2조).<sup>73)</sup> 사무총장은 가급적 신속하게 중재판정의 형식에 관하여 수정을 제안하거나 중재판정부의 자유로운 판단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 내용에 관한 판단에도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사무총장이 그 형식에 관하여 승인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을 하지 못한다(동 규칙 28.2조).<sup>74)</sup>

## (2) 중재판정의 결정

중재인이 복수인 경우 중재판정은 다수결로 결정한다. 다수결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의장중재인이 단독으로 중재판정을 해야 한다(동 규칙 28.5조).<sup>75)</sup> 중재판정에는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다만 신속절차에서는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중재판정의 이유를 생략할 수 있다(동 규칙 5.2조e). 중재판정은 중재인이 서명한 사본을 당사자에게 교부한다(모델법 31조 ④). 당사자에게 중재판정의 사본이 교부된 시점에 중재판정은 내려진 것으로 된다(국제중재법 19B조 ③).

## (3) 중재비용 및 변호사비용

### 1) 중재비용

SIAC의 중재비용에는 ① 중재판정부의 보수 및 경비, ② SIAC의 관리요금 및 경비, ③ 중재판정부에서 요구된 전문가의 의견 및 기타 보조자의 비용 등이 포함된다(동 규칙 31.2조) 중재비용의 구체적 금액의 결정 권한은 SIAC사무총장이 가지고 있으며(동 규칙 32.1조), 중재비용의 부담비율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에서 그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동 규칙 31.1조).

실제로는, 우선 중재인의 비용은 통상의 사건에서 중재판정까지 내려진 경우 SIAC규칙에서 정하는 상한 금액의 8할 정도가 중재인비용으로 된다고 한다.<sup>76)</sup> 중재비용의 부담비

73) ICC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TOR이 의무로 되어 있는 바, TOR에 중재판정부 또는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중재판정을 하여야 한다(ICC규칙 30.1조). 실무에서는 TOR부터 6개월 이내라는 기한이 준수되는 경우는 적고 대부분 이 기한은 중재법원에 의하여 연장되고 있다(ICC규칙 30.2조).

74) ICC에서는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에 서명하기 전에 중재판정의 초안을 ICC중재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의 형식에 관하여 중재법원이 승인을 받기 전에는 중재판정을 할 수 없다(ICC규칙 33조). 실제로 ICC중재법원은 경험이 풍부한 자가 중재판정의 실체적 내용에 대하여 조언을 함으로써 실체적으로 잘못된 중재판정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SIAC은 사무총장이 중재판정에 대하여 심사를 행하고 있으며, 중재판정의 심사방법의 차이가 SIAC과 ICC의 큰 차이점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栗田哲郎, 前掲論文(上), 859面).

75) 이점에 대하여, KCAB은 “중재인이 복수이고 특정 쟁점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판정 또는 결정은 중재인 과반수의 결의에 따른다. 그러한 결의가 성립되지 않는 쟁점에 대해서는 의장중재인의 결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규칙 30조).

76) 다만 9할 정도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복잡한 사안인 경우에는 중재인이 상한철폐(Lifting Cap)를 청구하기도 한다. SIAC의 관리요금 등은 중재인 비용과 동일한 비율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栗田哲郎, 前掲論文(上), 861面).

율은 중재판정부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사안의 내용, 당사자의 중재에 응하는 태도 등 많은 요소에 의하여, 승소당사자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패소자에게 중재비용 전액을 부담하라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 2) 중재를 위한 비용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 중에서 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호사비용, 기타 당사자비용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할 권한을 가진다(동 규칙 33조). 이를 위의 중재비용과 구별하여 중재를 위한 비용이라고 부르고 있다. ① 구체적인 금액은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에서 결정하지만(동 규칙 33조),<sup>77)</sup>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SIAC사무총장이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국제중재법 21조). 이 SIAC사무총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소할 수 없다. ② 당사자 간의 부담비율은 중재인의 재량으로 결정한다(동 규칙 33조).<sup>78)</sup> 중재를 위한 비용의 부담비율에 관해서도, 많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SIAC에 의하면, 패소당사자가 승소당사자의 중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중재판정부가 명하는 경우가 많다.<sup>79)</sup>

## (4) 중재판정의 정정

당사자는 중재판정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중재판정의 모든 계산상의 착오, 사무상의 착오 또는 같은 성질의 착오를 사무총장 및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정정하도록 중재판정부에 청구할 수 있다(동 규칙 29.1조).

## 10. 중재판정의 집행

실무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중재판정에 대하여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어느 정도 실제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SIAC에 의하여 현지점에서 보고되고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에 관하여 장애가 비교적 적은 국가 :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②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주의가 필요한 국

77) 실무에서는 중재를 위한 비용의 구체적 금액에 관한 결정권한은 중재판정부에 있지만, 실무상 많은 사건에서는 중재판정부에서 중재판정에 있어서 결정하면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

78) ICC의 중재를 위한 비용의 결정방법에는, ① 패소자에게 비용 전액의 부담을 명하는 방법, ② 각 청구에 관하여 상대적인 승소의 비율을 고려하여 사안의 결과에 따라 비용을 안분하는 방법, ③ 당사자 간에 균등하게 비용을 분담하든지 또는 각 당사자가 자기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첫째 방법이 선호되고 있다고 한다.

79) 싱가포르 재판절차는 패소자부담제도를 채용하고 있고, 패소자에게 승소자의 중재비용 중 5할에서 7할 정도의 부담을 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중재인이 싱가포르인인 경우 이 재판절차의 영향을 받아서 중재절차에 서도 승소당사자의 중재비용 중 5할에서 7할 정도를 패소자에게 부담을 명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栗田哲郎, 前掲論文(上), 861面).

가 :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등. ③ 중재판정의 집행사례 수집이 불충분한 국가 :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라오스 등.<sup>80)</sup>

## V. 신속절차 및 긴급중재절차

### 1. 신속절차

신속절차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중재절차를 간이하고 신속한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SIAC의 신속절차는 스톡홀름중재규칙, 스웨덴중재규칙을 본받아 2010년 7월의 SIAC규칙에서 규정되었다. SIAC의 신속절차 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20건(이 중 8건은 관련사건이었다)이 신청되어 15건이 인정되고 5건이 거부 또는 계쟁중이며, 2011년에는 15건이 신청되어 9건이 인정되고 6건이 거부 또는 계쟁중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81)</sup>

#### (1) 요건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SIAC규칙에 따른 일정한 요건<sup>82)</sup>이 충족된 경우 서면으로 그 중재절차를 신속절차에 의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할 수 있다(동 규칙 5.1조). 당사자가 사전에 신속중재에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다.<sup>83)</sup>

#### (2) 절차

신속절차는 당사자가 사무총장에게 SIAC규칙 5.1조에 기하여 신청하면, SIAC중재법원장이 당사자의 의견을 검토한 후 중재절차가 신속절차로 행해져야 한다고 결정한 때 신속절차의 규정이 적용된다(동 규칙 5.2조).<sup>84)</sup> 실무에서는 신속절차 신청자가 신청서에서 신

80) 栗田哲郎, 上掲論文(下), 862面.

81) 栗田哲郎, 上掲論文(下), 863面.

82) 여기에서 일정한 요건이란, ① 청구액, 반대청구액 및 모든 상계항변액의 누계에 의하여 분쟁금액이 5,000,000싱가포르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② 당사자가 그 취지를 합의한 경우, ③ 극히 긴급성이 높은 사안의 경우 등이다. 여기에서 5,000,000싱가포르달러는 약 40억원 정도로서 금액요건이 상당히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참고로,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우 1억원 이하이고, 일본 상사중재협회의 경우 2,000만엔 이하, CIETAC의 경우 인민폐 2백만원 이하이다).

83) 이 경우 모델조항은 다음과 같다. The parties agree that any arbitration commenced pursuant to this clause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Expedited Procedure set out in Rule 5.2 of the SIAC Rules.

84) SIAC중재법원장이 신속절차를 채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① 사무총장은 SIAC규칙에서 모든 기한제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중재법원장이 특별한 결정을 하지 않는 한, 그 사안은 단독 중재인에게 부탁해야 한다(다만, 당사자가 복수의 중재인으로 합의한 경우 복수중재인이 선임되기도 한다). ③ 당사자가 그 분쟁은 서증만을 근거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모든 증인 및 전문가 증인 신문과 모든 주장을 위한 기일을 열어야 한다. ④ 중재판정은 예외적으로 사무총장이 그 기한의 연장

속절차 적용의 청구 및 근거를 기재하고, 피신청자가 회답서에서 신청자의 청구의 승낙 여부를 회답하고 있다.

## 2. 긴급중재절차

긴급중재는 재판절차상 가처분, 가압류와 비슷한 제도로서, 중재판정부의 구성을 기다리면 심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긴급중재인을 선임하여 긴급중재판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는 절차이다. SIAC은 2010년 7월에 이 규정을 도입하였고, ICC도 2012년 1월의 신 규칙에서 이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예컨대, 계속적 공급계약에서 피신청인이 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해버린 경우에 공급을 재개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회복곤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신속하게 매각하지 않으면 큰 위약금을 제3자에게 청구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매각하지 않으면 물품이 부패해버리는 경우 등에 이용된다.

2011년 12월 말까지 SIAC에 신청된 긴급중재는 4건이다. 이 신청된 사건은 잠정적 중재판정이 수일 내에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일반적 중재판정에 들어가지 전에 잠정적 중재판정에 의하여 화해로 해결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긴급중재는 화해를 형성하는 수단으로서 유효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sup>85)</sup>

### (1) 요건

긴급구제를 필요로 하는 당사자는 중재신청서와 동시 또는 직후에(중재판정부 구성 이전에), 긴급적·잠정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청구하는 구제의 성질, 이와 같은 구제가 긴급하게 필요한 이유를 SIAC 사무총장과 모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한 신청서에는 당사자가 이러한 구제를 구할 권리가 있는 이유도 기재해야 한다(SIAC부속규정 1의 1조).

### (2) 절차

SIAC이 신청을 접수한다고 결정한 경우, 사무총장이 신청을 수령하고 신청비용을 받은 후 1영업일 이내에 SIAC중재법원장은 긴급중재인을 선임해야 한다(SIAC부속규정 1조 2조). 긴급중재인은 선임 후 2영업일 이내에 긴급적 구제의 신청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일정을 정해야 한다(동 부속규정 1의 5조).<sup>86)</sup> 긴급중재인은 정식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에

을 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 구성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⑤ 당사자가 불필요하다고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간단한 형식으로 중재판정의 이유를 실시해야 한다(동 규칙 5.2조).

85) 栗田哲郎, 前掲論文(下), 864面.

86) 긴급중재인은 필요한 경우 잠정적 구제를 명할 권한을 가진다(동 부속규정 1의 6조).

는 활동할 권한이 없지만 당사자의 합의로 긴급중재인이 정식 중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도 있다(동 부속규정 1의 4조). 정식 중재판정부는 긴급중재인이 내린 잠정적 중재판정 등을 수정·철회할 수 있고 긴급중재인의 판정이유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 잠정적 중재판정은 그 결정 또는 중재판정을 한 후부터 90일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부가 최종적인 중재판정을 행한 경우, 또는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동 부속규정 1의 7조).

### (3) 강제집행 여부

긴급중재판정부가 내린 잠정적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즉 긴급중재인은 ‘중재판정부 구성 전’에 잠정적 구제를 하는 것이므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단계의 중재판정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 아직까지 싱가포르에서 이 문제를 직접 다룬 사례는 없다.

## VI. 결론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외국기업과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국가들 간의 대규모 M&A나 투자의 기회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제거래 계약서상 중재조항을 포함시키고 분쟁을 국제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중재지로 하는데 합의할 수 없다고 하여도 상대국의 법원을 피하고 제3국을 중재지로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싱가포르는 최근 중재지로서 크게 부상하고 있으며 SIAC의 중재규칙도 잘 정비하고 있어서 SIAC을 중재기관으로 선택할 여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기업들로서는 SIAC의 중재절차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SIAC은 최근 두 차례의 중재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신속절차를 창설하고 중재법원을 설립하는 등 신속성과 엄격한 중립성,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38개 국가의 372명의 중재인 패널을 가지고 있고 제3국인을 중재인으로 선정하도록 권고하는 등 중재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재비용에 있어서도 ICC보다도 저렴한 경우가 많다. SIAC에는 중재법원이 없는 것이 ICC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되어 왔는데 2013년 4월에 중재법원이 설립되어 이러한 차이점도 해소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SIAC은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국제중재기관 선호도조사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요컨대, 싱가포르가 중재지로서 크게 부상하고 있는 것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투명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SIAC이 국제중재기관으로서 선호되고 있는 이

유는 ‘중립성’과 ‘국제성’, ‘평판 및 인식’, ‘중재규칙’ 등에서 좋은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 배경에는 싱가포르가 국제중재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하여 국제중재기관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싱가포르 정부의 중재기관에 대한 지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대한상사중재원이 SIAC처럼 중립성, 공정성, 신속성 차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외국의 기업들로부터 국제중재기관으로 선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국가적 신인도를 높임과 동시에, 싱가포르 정부가 국제중재기관 육성을 위하여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을 거울삼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을 세계적인 국제중재기관으로 육성시켜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갑유,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규칙 주요 개정내용”, 「법률신문」 3980호, 법률신문사, 2011.
- 김도훈, “긴급중재인제도에 관한 소고: 국제중재기관들의 긴급중재인제도에 관한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62호, 2013.
- 박범철·주이화·심상렬, “신속절차에 관한 아시아 4개국의 국제중재규칙 비교 연구 -CIETAC, HKIAC, SIAC, KCAB를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3.
- 박원형,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의 개정동향 : ICC중재규칙의 개정과 비교하여”, 「중재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2.
- 신군재, “KCAB 개정 중재규칙과 CIETAC 중재규칙의 비교연구”, 「중재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8.
- 오원석·김용일, “ICC중재에서 중재인 선정과 확인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7.
- 오현석, “아시아 국제중재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홍콩의 전략”, 「중재」 329호, 대한상사중재원, 2009.
- 윤진기, “2005년 CIETAC 중재규칙 개정과 중국 중재법상의 문제점 개선”, 「중재연구」 제16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6.
- 이재우, “ICC중재판정”, 「중재」 295호, 대한상사중재원, 2000.
- 장승화,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한 제언”, 「중재」 330호, 대한상사중재원, 2009.
- 하충룡, “한국과 ICC간 중재비용에 관한 분석”, 「중재학회지」 제10권, 한국중재학회, 2000.
- 함영주, 「분쟁해결방법론」, 진원사, 2010.

Henny Mardiani, “Arbitration in Singapore”, 「중재연구」 제16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6.3.  
小田博, “ICC仲裁におけるICC國際仲裁裁判所の役割”, 「仲裁・ADRフォーラム」, 第4卷, 2013.  
栗田哲郎, “シンガポール國際商事仲裁(上)・(下)”, 「國際商事法務」 40卷 5號, 6號, 國際商事  
法務研究所, 2012.5, 6.

青木大, “シンガポール國際仲裁の實務(1)-(5)”, 「國際商事法務」 41卷 10號-42卷 2號, 國際商  
事法務研究所, 2013.10-2014.2.

Maxwell Chambers : <http://www.maxwell-chambers.com/>

SIAC : <http://www.siac.org.sg/our-rules/rules/siac-rules-2013>

## ABSTRACT

###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of Singapore

Sang-Chan Kim

Yu-Jung Kim

These days, in line with the increase of opportunities in our country's firms to do transaction, large-scale M&A and investment with foreign firms incorporating arbitration clauses in the contracts have become general practice. Recently, Singapore has come to the fore as a place of arbitration and, particularly,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SIAC) was assessed as the favored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 uniquely in Asia at the *2010 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 Choic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long with the ICC, LCIA, and AAA/ICDR. Therefore, the country's firms need to understand properly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procedure of Singapore.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of Singapore, focusing on the arbitration procedure of the SIAC. The Center revised arbitration rules twice in 2010 and 2013, and established the Court of Arbitration of SIAC in April 2013 for the first time in Asia in pursuit of stricter neutrality and promptness. It further seeks to run the arbitration procedure fairly by selecting a third country's people as an arbitrator, while its arbitration expenses are cheaper than those of the ICC.

The study believes that for the country's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such as the KCAB to jump forward as a world-class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render positive support to them, learning from Singapore which does not spare any political and financial assistance to cultivate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On the other hand, KCAB should also try hard to improve in the aspects of neutrality, fairness, and promptness and to be selected as a trustworthy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 by firms in Asian countries.

**Key words** :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Arbitration Procedure, Place of Arbitration, Arbitration Rules, SIAC, The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